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6년 1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7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선발) ① 주재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선발하거나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p> <p>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 선발된 사람</p> <p>2. ~ 4. (생략)</p>	<p>제6조(선발) ① -----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p> <p>-----</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p> <p>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외사무소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할 때 1회에만 2년의 범위에서 또는 지방전임계약직의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상의 채용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p>

군산시 민방위 경보 단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6년 1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29호

군산시 민방위 경보 단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민방위 경보 단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민방위경보시설을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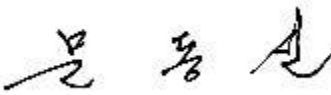
다 음

- 1. 본인은 제한구역인 민방위경보시설을 출입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 행위를 자각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20 년 월 일

소속 :	직 :	생년월일 :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군산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6년 1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예규 제29호

군산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관리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군산시 내항2길 312(해신동) 소재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관리 및 사용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지내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로 입주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라 함은 수산물연구가공 거점단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징수, 청소, 경비, 안전관리 등 기타 단지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군산수산물연구가공 거점단지(이하 “단지”라 칭한다.) 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사용인” 또는 “입주업체”라 함은 관리자로부터 단지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업체 종사자”라 함은 “입주업체”에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

하며, 입주업체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포함한다.

5. “관리업체”라 함은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물 관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용부분”이라 함은 사용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말한다.

7. “공용부분”이라 함은 제4호의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으로서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그 대지를 포함한 부속물을 말한다.

가. 주공용부분 : 사용인 전용부분의 복도·계단·입구·승강기 등 동 건물의 해당라인의 사용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나. 기타공용부분 : 가목의 주공용부분을 제외한 단지내 전체 사용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조 (적용범위) 단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관리자(소속 직원)
2. 사용인(입주업체 및 소속 직원)
3. 관리업체의 소속 직원
4. 그 밖의 당 단지 관리의 이해 당사자

제4조 (준수의무) 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단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사용허가조건 및 본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사용인은 임차한 시설물의 사용자(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장 사용인의 권리·의무

제5조 (사용인의 권리) 사용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을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사용허가조건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사용인협의회를 구성할 권리

제6조 (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변제하거나 사용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당해 시설을 본래의 허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산가치의 보전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사용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 등을 3개월이상 연체시 관리기구에서 재제조치(단전, 단수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관리자가 시설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신분의 확인, 사진 및 자료 제출, 실태조사 등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조해야 한다.

4. 에너지 및 소비절약운동 등 정부시책추진에 따른 관리기구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관리자 또는 관리업체가 건물의 점검·보수 또는 제3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위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전용부분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에게 2일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라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물의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 제외) 기둥, 보, 바닥, 지붕 등 주요 구조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용부분 등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 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전용부분을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5.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공용시설”이라 한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와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안전관리 상 위험한 장소를 무단출입하는 행위(예 : 옥상, 난간, 기계실 및 전기실)
7. 사용인은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사용인은 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 사용(임대)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입주 당시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나. 전용부분의 구조물을 증설, 제거, 개량하는 행위

다. 공용시설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장기간 적재하여 통행 등에 방해를 주는 행위

라. 건축시설물 및 전기, 급수, 냉난방 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마.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바. 외벽 등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공동생활을 해치는 행위

제8조 (배상책임 및 제재규정) ①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용 및 공용부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사용인 또는 공용부분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자 및 관리업체는 사용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점검 및 수리에 따른 출입을 거부한 사용인은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자는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전, 단수 및 상품 반출·입 금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1차 시정명령 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⑥ 사용인 등은 본 규약 또는 사용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관리자 및 군산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공용부분의 무상사용) 관리자 및 위탁관리(용역)업체는 관리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공제)가입) ① 관리자는 단지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공제)을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공제)관련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관리방법

제11조 (관리업체의 의무) ① 관리업체는 관계규정과 관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업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업무 집행에 따른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업체의 업무범위)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내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시설물내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3.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공동생활의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강구
4. 관계법과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관리자가 정한 사항의 집행
5. 그 밖의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관리업체의 책임) 관리업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관리업체의 시정요구) ① 관리업체는 사용인 등에 제6조에서 정한 사용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

리기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비

제15조 (관리비의 구성) ① 관리비는 다음의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용분은 해당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동 부담분은 사용인의 임차면적 지분별로 분담한다.

1. 일반관리비(관리비 항목별 구성과 산정방법은 관련법령과 관계인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부과기준이 바뀔 수 있음)
2. 전기·상하수도(공동사용료 포함)
3. 그 밖의 사용인협의회에서 정한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비

② 관리자는 사용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사용인을 대하여 징수권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상하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하수도료를 포함한다.)
3. 폐기물처리 수수료

③ 관리자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개 업체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관리자가 직접 보수하고, 당해 사용인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해당 형별 평균치를 적용한다.

⑤ 사용인이 휴업 등의 사유로 비우는 경우에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16조 (관리비 등의 수납 등) ①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상하수도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 약관 등에 따른다.

② 관리비 납부기한은 관리자가 결정하며,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까지로 한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관리비 등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①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하여 관리자가 정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입주가가 관리비 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단전·단수조치하고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비 등의 사용 등) ① 관리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업체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을 거점단지 게시
판 등에 공개한다.

제5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9조 (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내의 모든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사용인 등 최종퇴실자는 화기단속, 중요서류 및 물품보관시설의 잠금상태
와 사무실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등한 후 퇴실해야 한다.

③ 사용인 등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일어나는
화재, 도난 등에 대하는 전적으로 사용인이 책임진다.

제20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한다.

제21조 (출입관리) 건물 출입문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 절약, 안전문제, 도난방지, 전염병 예방 등으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 하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 (준용) ① 본 규약과 사용허가서간 상반된 부분이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② 본 규약과 시설물 위·수탁관리계약서간에 상반된 부분이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약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16 - 55 호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폐지이유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신설되어 확정일자 부여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계약증서 소지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에 존치 필요성이 없고,
-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05호, 2013.12.31. 개정)이 2014.1.1.부터 개정되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절차 및 사무처리에 관

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 중복되고 효율성이 없어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T.063-454-2542, F.063-452-830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조소정 (063-454-2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고시 제2016-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소)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 8.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비응도동 3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소)사업
 - 나. 명 칭 :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167,500㎡
 - 나. 규 모 : 설비용량 200MW, 공급전압 154kV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5, 203호(수송동)
 - 성 명 : 중부바이오에너지(주) 대표 나병제
 -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5.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2016.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군산시 비응도동	36	잡	167,500	167,5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군산시 고시 제2016-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옥구회전교차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옥구회전교차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83)에 비치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16번지의외 4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6)사업
 - 나. 명 칭 : 옥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가. 사업면적 : 5,076 m²
 - 나.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1식
4. 사업시행자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 나. 성 명 : 군산시장(건설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당 초 : 2015. 4. 17. ~ 2015. 12. 31.
 - 나. 변 경 : 2015. 4. 17. ~ 2016. 7.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편입토지조서 (옥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군산	옥구	선제	96-2	도	46	46	국토교통부	-	
2	군산	옥구	선제	95-5	도	623	525	군산시	-	
3	군산	옥구	선제	93-12	도	4,213	793	전라북도	-	
4	군산	옥구	선제	94-12	도	52	52	군산시	-	
5	군산	옥구	선제	94-1	도	12	12	군산시	-	
6	군산	옥구	선제	94-6	도	42	42	군산시	-	
7	군산	옥구	선제	94-8	대	3	3	군산시	-	
8	군산	옥구	선제	94-16	대	334	334	군산시	-	
9	군산	옥구	선제	94-9	대	49	49	군산시	-	
10	군산	옥구	선제	94-13	도	136	136	군산시	-	
11	군산	옥구	선제	94-7	대	95	95	군산시	-	
12	군산	옥구	선제	94-4	대	25	25	군산시	-	
13	군산	옥구	선제	94-2	대	10	10	군산시	-	
14	군산	옥구	선제	94-10	대	238	238	군산시	-	
15	군산	옥구	선제	94-14	도	73	73	군산시	-	
16	군산	옥구	선제	517-7	대	241	217	군산시	-	
17	군산	옥구	선제	518-1	대	80	67	군산시	-	
18	군산	옥구	선제	519-3	대	35	32	군산시	-	
19	군산	옥구	선제	519-2	도	99	16	군산시	-	
20	군산	옥구	선제	519-4	잡	185	172	군산시	-	
21	군산	옥구	선제	515-10	전	186	171	군산시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 ²)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2	군산	옥구	선제	514-6	답	80	41	군산시	-	
23	군산	옥구	선제	516-7	대	114	109	군산시	-	
24	군산	옥구	선제	517-8	대	25	25	군산시	-	
25	군산	옥구	선제	517-6	도	103	45	군산시	-	
26	군산	옥구	선제	516-9	도	124	8	군산시	-	
27	군산	옥구	선제	517-5	도	105	56	군산시	-	
28	군산	옥구	선제	517-3	도	99	99	군산시	-	
29	군산	옥구	선제	516-2	도	215	36	전라북도	-	
30	군산	옥구	선제	517-10	도	91	85	군산시	-	
31	군산	옥구	선제	796-1	도	7,263	524	국토교통부	-	
32	군산	옥구	선제	94-11	도	12	12	군산시	-	
33	군산	옥구	선제	98-6	도	53	32	국토교통부	-	
34	군산	옥구	선제	98-4	도	79	79	국토교통부	-	
35	군산	옥구	선제	98-43	대	84	3	군산시	-	
36	군산	옥구	선제	98-5	도	13	10	국토교통부	-	
37	군산	옥구	선제	97-1	도	608	608	전라북도	-	
38	군산	옥구	선제	98-21	도	17	17	국토교통부	-	
39	군산	옥구	선제	98-1	도	13	13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임재섭	
40	군산	옥구	선제	98-2	도	149	149	국토교통부	-	
41	군산	옥구	선제	98-23	도	7	7	국세청	-	
42	군산	옥구	선제	98-22	도	10	10	국세청	-	
계						16,041	5,076			

군산시 고시 제 2016-6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군 산 시 장 (인)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목적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 지정 현황 : 망해산외 4개산 / 604.52ha

3. 입산통제기간 : 산불조심기간

○ 봄철 : 2015. 2. 1 ~ 5. 15 / 가을철 : 2015. 11. 1 ~ 12. 15

4. 지정 년월일 : 2015. 1. 6.

5. 통제구역의 입산방법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산허가 신청서를 군산시청에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 가능

-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8)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57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산림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 063-454-2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현황 1부.
2.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군산시 고시 제2016 - 8호

군산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01월 15일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군산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사정동 131 일원	188,700	-	188,700	'86.5.23	

2.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8,700		188,700	100.0	
운동시설	운동시설	69,363	248.5(증)	69,611.5	36.9	운동장, 운동시설
편익시설	편익시설	275		275	0.1	화장실 등
녹 지	녹 지	58,035		58,035	30.8	조경, 가족놀이공간 등
도 로	도 로	40,044		40,044	21.2	도로
주 차 장	주 차 장	19,306	248.5(감)	19,057.5	10.1	주차장
광 장	광 장	1,677		1,677	0.9	야외공연장 등

나. 조성계획(세부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88,700		188,700	19,481	32,518	증)248.5	증)248.5	19,729.5	32,765.5	
운동시설	소 계	69,363	증)248.5	69,611.5	19,249	32,227	증)248.5	증)248.5	19,497.5	32,475.5	
	주경기장	29,092		29,092	5,355	6,472			5,355	6,472	
	야구장	22,164		22,164	7,209	13,176			7,209	13,176	
	실내체육관	6,284		6,284	4,469	10,368			4,469	10,368	
	테니스장	8,131		8,131	164	164			164	164	
	게이트볼장	2,347		2,347	2,024	2,020			2,024	2,020	
	야외농구장	359		359							
	족구장	986		986							
	씨름장	0	증)248.5	248.5	0	0	증)248.5	증)248.5	248.5	248.5	신축
편의시설	소 계	275		275	232	290			232	290	
	화장실(1)	116		116	95	153			95	153	
	화장실(2)	109		109	88	88			88	88	
	경비실	50		50	49	49			49	49	
녹지	소 계	58,035		58,035							
	파고라(1)	164		164							
	파고라(2)	71		71							
	파고라(3)	15		15							
	파고라(4)	44		44							
	모정	16		16							
	가족놀이공간(1)	2,840		2,840							
	가족놀이공간(2)	1,380		1,380							
	가족놀이공간(3)	771		771							
	가족놀이공간(4)	727		727							
	휴식공원	33,745		33,745							
녹지	18,262		18,262								
도로	소 계	40,044		40,044							
	진입로	13,403		13,403							
	내부도로(1)	2,674		2,674							
	내부도로(2)	3,310		3,310							
	내부도로(3)	772		772							
	내부도로(4)	10,793		10,793							
	내부도로(5)	5,271		5,271							
	내부도로(6)	3,821		3,821							
주차장	소 계	19,306	감)248.5	19,057.5							
	주차장(1)	3,783		3,783							
	주차장(2)	1,089		1,089							
	주차장(3)	5,422		5,422							
	주차장(4)	2,839		2,839							
	주차장(5)	6,173	감)248.5	5,924.5							
광장	소 계	1,677		1,677							
	야외공연장	1,144		1,144							
	광장	533		533							

3.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6-1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1월 15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구암동, 개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 나. 명 칭 : 154kV 동군산~장항,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인출정비공사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결 정		실시계획 인가사항	비 고
		위 치	연장 (km)		
전기공급 설비	제1송전선로	군산시 구암동, 개정동	2.147	케이블헤드 667㎡ 선하지 3,225㎡	군산고 94 (15.7.17)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장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4. 5. 23. ~ 2015. 12. 30.
 - 변경 : 2014. 5. 23. ~ 2016. 06. 30. (증 6개월)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구암동	276-21	답	667	667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	구분지상권	철탑
2	군산시 구암동	125-2	구	5,681	78	한국농어촌공사	-	-	-	-	구분지상권 (31.7~56.8)m
3	군산시 구암동	284	대	2,202	621	오금수	군산시 경암동 656-19	-	-	-	구분지상권 (19.3~46.2)m
4	군산시 구암동	286-2	답	2,881	562	박중희	군산시 경암동 316-2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25.4~55.8)m
5	군산시 구암동	286-5	답	2,881	656	이성근	군산시 양안1길 45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22.4~53.1)m
6	군산시 구암동	288	답	2,942	194	이길순	군산시 신영동 10-20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30.0~60.1)m
7	군산시 구암동	289-3	답	2,080	63	양병성	군산시 서수송2길 23, 103동 1601호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33.0~58.7)m
						최혜윤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7길 21, 305호(화양동)				
8	군산시 구암동	289-5	답	5,254	971	김경자	익산시 마동 137-1 주공아파트 209-103	-	-	-	구분지상권 (21.4~53.1)m
						김인수	군산시 구암동 333-4				
9	군산시 구암동	604	구	3,575	80	농림부	-	-	-	-	구분지상권 (20~46.2)m

군산시 고시 제2016-11호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도면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연번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사 유	비 고
			유 형	등 급	면 적(m ²)		
1	서개정	개정동 산45 일원	붕괴	D	6,277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고 척	대야면 죽산리 666 일원	붕괴	D	5,109		
3	새 터	조촌동 77-17 일원	붕괴	D	21,558		

2.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 예산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라 2017년 이후 정비시행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군산시청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 : 2016년 1월 15일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열람 및 문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T. 063-454-3860)

붙임 :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 끝.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및 현황사진

<서개정지구>



위 치 도 (개정동 산54번지일원)



현 황 사 진

<새터지구>



위 치 도 (조촌동 77-17번지일원)



현 황 사 진

<고척지구>



위 치 도 (대야면 죽산리 666번지일원)



현 황 사 진

군산시 고시 제 2016-12 호

도로명주소(부여·분할)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15.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1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분할 : 2건

지번주소	분할 전 도로명주소	분할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82-2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5길 13-3(경암동)	2016011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 면 원우리 554-8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울2길 34	20160118	20070528	구울마을소재
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64-16, 64-15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371(개정동)	20160118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 존도로명 활용
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90-10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5길 46-17(수송동)	20160118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32-3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안 길 21(수송동)	20160118	20100125	수송중앙로단절
6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399-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115	20160118	20100125	행정리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813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군둔길 162-9	20160118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8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92-4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5길 49(오식도동)	20160118	20100125	옛지명에 서수번호사용
9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71-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9 길 7(수송동)	20160118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10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78-14	전라북도 군산시 무역로 18(오식도동)	20160118	20100125	군장산업단지내 자유무 역지역에 이르는 도로 로 지역명칭에서 인용
11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0-8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산단 로 143-43(비응도동)	20160118	20100125	군장산업단지에서 가능 넓고 중심이 되는 도로 로 지역명칭에서 인용
12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1-2	전라북도 군산시 철성6길 48(산북동)	2016011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1-9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46(산북동)	2016011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4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48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3길 2(지곡동)	2016011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195-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162(나운동)	20160118	20100125	나운동을 관통하는 도로
16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43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3길 26(미룡동)	2016011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 향성 도로명 부여
1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155-20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1길 24(나운동)	20160118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 식, 방향성으로 도로 명 부여
18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 동 3602-7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53(산북동)	20160114	20100125	부곡지구와 원산북지 구 연결하는 도로로 합성어를 사용

<도로명주소 분할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로 460-1(명산동)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60-2(명산동)	20160113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로 460-1(명산동)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60-1(명산동)	20110729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군산시 공고 제2016 - 54 호

2016년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군산시(전라북도 보조사업)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6. 1. .

군 산 시 장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공간
 - 읍·면지역 전체
 -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0,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 ※ 2016년도 사업물량 : 군산시 2동 20,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 신청서식
 - 전라북도 및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주택건축과 부서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시군별 해당물량 소진시까지

3. 선정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시·군) → 대상주택 확정(전라북도) → 임차인 공모 → 시장·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빈집 리모델링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주변 귀농귀촌인의 집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반값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하여야 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시 공모 후 입주가 원칙이나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군산시 건축과	454-3723	김제시 건축과	540-3482	장수군 민원과	350-2472	부안군 민원소통과	580-4885
익산시 주택과	859-5549	완주군 도시개발과	290-2873	임실군 민원봉사과	640-2297	※전주시는 사업 수요조사 시 미신청으로 제외	
정읍시 건축과	539-5862	진안군 민원봉사과	430-2463	순창군 농촌개발과	650-1765		
남원시 건축과	620-6593	무주군 민원봉사과	320-2486	고창군 종합민원과	560-2396		

5. 참고사항 : 전라북도 공고 2006-1호(2016. 1. 4.) 참조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첨부 1. 신청서 양식 1식

군산시 공고 제2016 - 73호

수용재결서정보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12. 22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3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3. 재 결 일 : 2015. 12. 22.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6. 1. 13 ~ 2016. 1. 28(16일간)
6. 재결서정보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52)
7.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옥구읍 선제리	1-231 (1-192)	답	162	전웅철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115-16				
옥구읍 오곡리	663-17 (663-3)	답	35	김점녀	옥구군 옥구면 이곡리 709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09)	박복순	군산시 문화로 36, 402동 1006호 (나운동, 주공영구 임대아파트)		상속 권자
						전우리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49번길 2-1, 203호(아음동)		상속 권자
						전창민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1417호(삼산동, 나 인파크삼산오피스 텔)		상속 권자
옥구읍 이곡리	669-3 (669-1)	답	2,613 × 1/6	전종태	옥구군 옥구면 선제리 109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09)	전옥선	파주시 조리읍 내사길 55, 106동 603호(파주푸르지 오아파트)		상속 권자
						전경숙	군산시 구영3길 57(신창동)		상속 권자
						전흥덕	군산시 구영3길 57(신창동)		상속 권자
						홍청자	군산시 수송동로 100, 102동 1202호(수송동, 군산수송 세영리첼아파트)		상속 권자
						전규하	칠곡군 왜관읍 자조2길 20, 505호		상속 권자
						문영환	군산시 옥산면 남내안길 14-10		상속 권자
						문정숙	군산시 옥산면 남내안길 14-10		상속 권자
						문홍배	군산시 옥산면 남내안길 14-10		상속 권자
옥구읍 이곡리	669-3 (669-1)	답	2,613 × 1/6	전학배	옥구군 옥구면 선제리 110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10)	전영애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 110동 1901호(구로동, 삼 성래미안아파트)		상속 권자
						서문영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41길 22(상도1동)		상속 권자
						서문선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41길 22(상도1동)		상속 권자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옥구읍 이곡리	669-3 (669-1)	답	2,613 × 1/6	전진풍	옥구군 옥구면 수산리 564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64)	전복임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7-10 (월계동)		상속 권자
						이희선	안성시 공도읍 전원길 10-6, 1동 101호(대림2차아파 트)		상속 권자
						이희궁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길 102-1(신대방동)		상속 권자
						강정순	군산시 신창동 30-1		상속 권자
						강정숙	광주시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0, 101동 203호 (우산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상속 권자
						강정희	제주시 추자면 영흥1길 2-17		상속 권자
						강숙경	군산시 하신3길 7, 103동 1501호 (나운동, 보람더하임아파트)		상속 권자
						곽서성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39블럭 6롯데 6-2 재원연립		상속 권자
전미영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19, 101동 911호(강남아파트)		상속 권자						
옥구읍 이곡리	669-3 (669-1)	답	2,613 × 1/6	전준석	옥구군 옥구면 오곡리 198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98)	전용수	하남시 대성로 69번길 70(항동)		상속 권자
옥구읍 이곡리	669-3 (669-1)	답	2,613 × 1/6	전만택	옥구군 옥구면 선제리 108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08)				

군산시 공고 제2016 - 90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5.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6. 1. 15.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6. 1. 15.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3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새긴날	재료	등록사유
공 인 신 조	군산시양성평등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3.6*3.6		2016. 1. 15	후각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군산시양성평 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군산시양성평등 기금운용관인	한글전서체 2.0*2.0		2016. 1. 15	후각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군산시양성평 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군산시양성평등 기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2016 1.15	후각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군산시양성평 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3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폐기일	재료	폐기사유
공 인 폐 기	군산시여성발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1*2.1		2016. 1. 15.	후각	군산시 여성발 전 기본조례가 군산시양성평 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군산시여성발전 기금운영관인	한글전서체 2.0*2.0		2016. 1. 15.	후각	군산시 여성발 전 기본조례가 군산시양성평 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군산시여성발전 기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1.8		2016. 1. 15	후각	군산시 여성발 전 기본조례가 군산시양성평 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0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야적장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한솔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민병규

2)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2-37 한솔로지스틱스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항만시설(야적장) 포장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항만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화물보관 효율성 증대 및 품질 향상

2)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45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비 고
1. 토 공	흙깎기 17,239 ^m ³ , 사토 14,767 ^m ³	
2. 배 수 공	U형측구(800×700) 335m, U형측구(500×500) 257m	
3. 포 장 공	아스콘포장 21,862 ^m ²	
4. 부 대 공	1식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